

포상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전력전자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가 시행하는 전력전자학회 및 전력전자공학의 교육, 학술, 기술에 관한 뛰어난 업적에 대하여 포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회상) 포상은 공로상, 학술상, 논문상, 기술상 및 이에 준하는 표창으로 한다. 본 상은 상장 또는 상패로 주어진다. 표창은 본 상에 준하는 공적은 인정되나 이에 미치지 못하는 자에게 주어진다. 수상자의 수는 약간명으로 하며, 해당자가 없을 경우에는 수여하지 않는다.

제3조(공로상) 공로상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전력전자분야 사업의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
2. 본 학회의 발전에 획기적으로 공헌한 자

제4조(학술상) 학술상은 본 학회의 정회원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전력전자 및 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학술에 현저한 업적이 있는 자
2. 관련 학회지 및 저서를 통하여 전력전자에 관한 학술의 보급과 계몽에 현저한 업적이 있는 자

제5조(논문상) 논문상은 본 학회의 정회원 중에서 우수한 논문의 저자에게 수여한다. 해당 논문은 당해 연도의 7월 1일을 기준으로 1년이 경과하지 않는 논문으로 전력전자학회 논문지에 발표된 논문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기술상) 기술상은 전력전자에 관한 제품, 설비 및 방식 등을 새롭게 완성하거나 개량하여 현저한 결과를 나타낸 자에게 수여한다.

제7조(수상의 제한) 수상자는 동일 종류의 상에 대하여 해당년도를 포함하여 3년 이내에는 재수상할 수 없다. 또한 모든 수상자는 본 학회의 회원(개인회원 혹은 법인회원)을 원칙으로 하며,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는 수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단, 우수 전력전자 기술 및 제품의 발굴과 관련된 다음의 상은 본 규정에서 예외로 한다.

1. 기술상
2. 올해의 전력전자제품상
3. KIPe Research & Publication Award

제8조(수상후보자의 추천) 수상후보자를 추천하려면 정기총회 개최예정일로부터 30일 이전까지 다음 서류를 서면으로 회장 앞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상의 종별
2. 수상후보(피추천자)의 성명, 회원의 종별, 근무처 및 직위
3. 상을 받고자 하는 사항 및 그 개요
4. 추천자의 인적사항

제9조(수상자의 선정) 수상자의 선정은 상훈심의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이사회에서 승인하여 선정한다.

제10조(포상의 수여) 포상의 수여는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학회장의 이름으로 정기총회에서 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1998년도 논문상은 창간호부터를 대상으로 한다.
3. 본 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15년 7월 10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5. 본 규정은 2017년 10월 25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6. 본 규정은 2019년 11월 9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7. 본 규정은 2023년 11월 17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